

■ 수산업법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24. 12. 24.>

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(제14조제2항 관련)

| 어업의 종류 | 대상 지역   |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|--|
| 마을 어업  | 부산광역시, 인천광역시, 울산광역시, 경기도, 충청남도, 전북특별자치도, 전라남도, 경상남도 | 마을어장 형망선,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         |
|        | 강원특별자치도, 경상북도, 제주특별자치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마을어장 형망선, 자원관리채취선,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|

비고

1. “마을어장 형망선”이란 형망을 이용하는 동력어선을 말한다.
2. “자원관리채취선”이란 잠수기를 이용하는 어선을 말한다.